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9조제1항).

II. 검토의견

1. 약칭 위치 변경(안 제9조제1항)

개정안 제9조제1항은 부양가족이 없어 관사 입주 자격이 없는 초급 간부도 관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이 받는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 지원 대상에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법 제9조제1항은 군인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의 형태는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사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그런데 개정안은 현행법이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사용하고 있음. 약칭은 특정 용어가 당해 법률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경우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서 표시함으로써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그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위치에서 규정하여야 함.²⁾

따라서 현행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약칭을 규정하도록 수정함.

[안 제9조제1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 ----- ----- -----

1)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군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p231-232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u>군 숙소</u>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 하여 제공한다. 1. <u>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이 조에 서 “군 숙소”라 한다)</u> 2. (생략)	----- ----- ----- ----- ----- <u>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 라 한다)</u>----- -----. 1. <u>군 숙소</u> 2. (생략)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